

(자율점검제 안내문)

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「한방 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 자율점검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22.3.8. 시행 2022.3.8.)」 및 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-352호, 시행 2021.12.30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한방 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한방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한 약제가 동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)년 ()월부터 ()년 (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진신고 관련 안내

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(36개월)이외 기간이나,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,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면제됩니다.

다만,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(언론보도, 수사,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)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) 자율점검 방법

- [점검사항]

- ① 한방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점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 점검 등

- [점검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- ② 36개월: 착오청구 확인 시 2019.7. ~ 2022.6. (36개월)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

- 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- 자율점검결과서
 -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, 세부내역서)
 -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 요청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
 - ※ 엑셀 등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저장장치로 제출
 -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[제출방법] 등기우편, 직접 방문,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을 활용하여 접수

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시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필요

*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은진 팀장 (☎ 033-739-5906), 김주연 과장 (☎ 033-739-5926)
유미선 대리 (☎ 033-739-5925), 정혜진 대리 (☎ 033-739-5913)
황수연 대리 (☎ 033-739-5914), 권폴잎 대리 (☎ 033-739-5912)
최선영 대리 (☎ 033-739-5946)

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

(요양급여기준 안내문)

한방 급여약제 구입 ·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

<p>착오청구 유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제 조제·투약한 약제와 다른 약제 대체청구로 인한 구입·청구 불일치 • 실제 조제·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청구로 인한 구입·청구 불일치 등
<p>착오청구 사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방급여약제를 구입하여 조제·투약한 약을 청구하여야 하나 대체·증량청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제 향사평위산(805원) 3포를 조제·투약하고 오적산(1,444원) 3포로 대체청구 - 실제 구미강활탕(1,424원) 3포를 조제·투약하였으나 6포로 증량청구 등
<p>요양급여 기준 등</p>	<p>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, 「의료법」 제22조 (진료기록부 등)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</p> <p>□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호, 2022.8.1.시행)</p> <p>제2조(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. <p>제3조(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.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,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,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 할 수 없다.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“기준처방별 가격표”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 한다. ④ 성인(11세 이상)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, 소아(11세 미만)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/5 2.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4 3.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/2 4.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/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.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,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<p>※ [별표1] 한약제제급여목록표, [별표2]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별가격표</p>